

목 차

주주총회소집공고.....	1
주주총회 소집공고.....	2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5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5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5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5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7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7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7
III. 경영참고사항	8
1. 사업의 개요.....	8
가. 업계의 현황	8
나. 회사의 현황	8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10
<input type="checkbox"/> 재무제표의 승인.....	10
<input type="checkbox"/> 정관의 변경.....	30
<input type="checkbox"/> 이사의 선임.....	35
<input type="checkbox"/>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36
<input type="checkbox"/>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36

주주총회소집공고

2016년 3월 10일

회 사 명 : (주)모나리자
대 표 이 사 : 노 유 호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전문건설회관 21층
(전 화) 02-829-8800
(홈페이지)<http://www.monalisa.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재경팀장 (성 명)유 영 찬
(전 화)02-829-8835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39기 정기)

주주님의 건승과 다행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상법 제365조와 정관 제15조에 의하여 제39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15조에 의거 본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일시 : 2016년 3월 25일(금) 오전 9시

2. 장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전문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02-829-8835)

3. 회의목적사항

《보고안건》

가. 감사보고

나. 영업보고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39기(2015.1.1~2015.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 현금배당: 1주당 50 원, 배당액 1,828,038,750 원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1명, 사외이사1명)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이익배당 예정내용

- 현금배당: 1주당 50원

5.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점 및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monalisa.co.kr),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의결권대리행사를 권유하지 않으며, 주주님께서 자유롭게 위임여부를 결정할수 있도록 참조로 보내드리는 위임장임을 알려드립니다.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참석 : 본인 신분증
- 대리참석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개인 및 법인인감
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8. 기타사항

-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으니 양해바랍니다.

주식회사 모나리자
대표이사 노 유 호 (직인생략)

주주총회참석장

◎ 주주명 : (인)

◎ 주식보유현황

실질주주번호	
실질주주명부	
주식수계	
의결권수	

◎ 회의 개요

▶ 명칭 : ㈜모나리자 제39기 정기주주총회
▶ 장소 :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전문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02-829-8835)
▶ 일시 : 2016년 3월 25일 (금) 09:00

-----절-----취-----선-----

대리인 참석용 위임장

대리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본인은 귀사의 주주로서 금번 제39기 주주총회에 상기인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위임합니다.
다만 본인이 귀사의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 및 수임인에게 위임되는 주식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주식 : 주
- 아 래 -

- 2016년 3월 25일 귀사의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서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하여 인정된 회의 발언,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의 제반의 권리를 행사하는 사항.
- 기타 이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

※ 위임장의 인감을 날인하시고, 주주총회 참석시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의결권대리행사를 권유하지 않으며, 주주님께서 자유롭게 위임여부를 결정할수 있도록 참조로 보내드리는 위임장임을 알려드립니다.

2016 년 월 일
주주명 : (인)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최종인 (출석률: 17%)	김수근 (출석률: 13%)	이동욱 (출석률: 17%)
			찬 반 여부		
1	2015.01.26	내부회계관리자의 1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의 승인	불참	불참	-
2	2015.01.26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의 승인	불참	불참	-
3	2015.01.30	제38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	불참	불참	-
4	2015.02.23	제3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찬성	찬성	-
5	2015.03.11	제3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부의안건 정정)	불참	불참	-
6	2015.03.27	제38기 정기주주총회의사록	불참	불참	-
7	2015.07.17	한국산업은행 산업운영자금대출 신규차입의 건 (금융기관 : 한국산업은행, 차입금액 : 5억원)	-	불참	불참
8	2015.08.31	관계회사 금전대여의 건 (관계회사 : 엠에스에스글로벌, 대여금액 : 50억원)	-	불참	불참
9	2016.01.28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	-	-	불참
10	2016.01.28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의 승인	-	-	불참
11	2016.01.28	제39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	-	-	불참
12	2016.02.23	제3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	찬성

사외이사 최종인은 2015년 3월 29일 임기만료에 따라 퇴임하였으며, 2015년 3월 27일 제 3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김수근, 사외이사 이동욱을 신규 선임 하였습니다. 사외이사 김수근은 2015년 10월 7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습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고
사외이사	1	1,000,000	74,290	74,290	-

※ 인원수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기준입니다

※ 보수총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동법 시행령 제168조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재임 또는 퇴임한 사외이사의 보수를 포함하였습니다.

- ※ 1인당 평균보수액은 보수총액을 작성기준일 현재 인원수로 나누어 단순 산출하였습니다.
- ※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합한 승인 금액입니다.
- ※ 사외이사 최충인은 2015년 3월 29일 임기만료에 따라 퇴임하였으며, 2015년 3월 27일 제3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김수근, 사외이사 이동욱을 신규 선임 하였습니다. 사외이사 김수근은 2015년 10월 7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습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대여금	(주)엠에스에스글로벌 (관계기업)	2015.09.01~2016.10.23	50	6.4

※ 상기 거래기간 및 거래금액은 대여금 3건의 단순 합산 수치입니다.

※ 상기 비율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787억원 대비 비율입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 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백만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주)쌍용C&B (관계기업)	매입,매출, 수익,비용	2015.01.01 ~ 2015.12.31	4,328	5.5
(주)엠에스에스글로벌 (관계기업)	매입,매출, 수익,비용	2015.01.01 ~ 2015.12.31	10,457	13.3
엠에스에스펄프(주) (관계기업)	매입,매출, 수익,비용	2015.01.01 ~ 2015.12.31	42,565	54.1
엠에스에스로지스틱스(주) (관계기업)	매입,매출, 수익,비용	2015.01.01 ~ 2015.12.31	8,888	11.3
엠에스에스에이치알엠(주) (관계기업)	매입,매출, 수익,비용	2015.01.01 ~ 2015.12.31	1,449	1.8

※ 상기 거래비율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78,701백만원 대비 비율입니다.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제지 사업부문 >

(1) 산업의 특성

제지산업은 종이 사용분야에 따라 문화용지(신문용지, 인쇄용지등), 산업용지(골판지,백판지 등), 위생용지(화장지, 기저귀, 생리대등), 특수지(컴퓨터용지등) 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위생용지의 사용량은 일반적으로 국민소득 또는 생활수준에 비례하여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지산업은 원재료 투입에서 초지공정, 가공공정까지 고도의 기술 및 설비투자를 요하는 자본집약적 장치산업 입니다. 또한, 장기적인 수요 예측이 필요한 산업이며, 주요 원재료인 펄프, 고지는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입니다. 특히, 제품원가의 35%~40%가 원재료비로 구성되어 있어 국제 펄프가격 및 환율변동에 의하여 수익구조가 가변적이며, 생활필수품으로 수요의 급격한 변동은 보이지 않고 계절적 요인 및 경기변동성이 타산업에 비해 적은 업종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위생용지는 화장지가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활수준의 고급화로 프리미엄 제품 다변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수준에 비해 아직 보급율이 낮은 성인용 기저귀 시장은 노령인구 및 복지예산의 증가, 성인용기저귀에 대한 인식의 전환 등으로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3) 경쟁요소

화장지 제품 시장은 초기 투자비용이 비교적 적고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 기업이 경쟁하고 있으며, 생리대 및 기저귀 시장은 기술집약적 제품으로 브랜드 인지도 위주의 시장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4)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회사는 환경관련 규제사항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온실가스, 에너지목표 관리업체로 지정받아,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사업부문 >

※ 당 사업부문은 제38기 반기보고서 부터 중단영업으로 분류하였으며, 재무상태표에는 계정분류를 하지않고 포괄손익계산서에만 중단영업이익 (-)부호로 계정분류 하였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 제지 사업부문 >

2015년 영업실적은 매출액 124,973백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약 0.1%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은 6,240백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약 △25.8% 감소한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메르스 여파, 시장의 과열경쟁에 따른 판매단가 하락, 수요의 정체, 대형 유통할인점의 영업일수 제

한, 신규채널 확장에 따른 부대비용 발생, 주요 원재료인 펄프의 자연재해, 중국의 수요증가 등으로 인한 가격상승 등이 영업이익 하락의 주요원인입니다. 2013년 10월에 완공된 RPF보일러가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에너지비용 절감을 하였고, 이는 경쟁력있는 원가구조를 야기하였습니다. 내수경기 침체와 경쟁심화 등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미래의 잠재적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설투자를 지속 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하여 경쟁력과 성장을 동시에 충족 할 수 있도록 투자역량을 강화하여 계속 기업가치를 극대화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2015년 기저귀 매출액은 1,94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144.8% 증가하였습니다. 수출물량 증가, 지속적인 홍보 및 투자, 신규브랜드 출시 등이 매출액 상승의 주요원인입니다.

< 화장품 사업부문 >

2011년 신규 사업으로 시작한 화장품사업은 대형할인점 유통 판매구조로 이루어져 매년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루어 내지 못하였습니다. 매출부진 및 영업이익 적자폭이 확대됨에 따라 2014년 8월부터 주매출처인 홈플러스 전매장에서 철수 완료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화장품사업부문은 제38기 반기보고서 부터 중단영업으로 분류하였으며, 재무상태표에는 계정분류를 하지않고 포괄손익계산서에만 중단영업이익 (-)부호로 계정분류 하였습니다.

(2) 시장점유율

- 시장점유율은 합리적인 추정이 곤란하여 기재를 생략함

(3) 시장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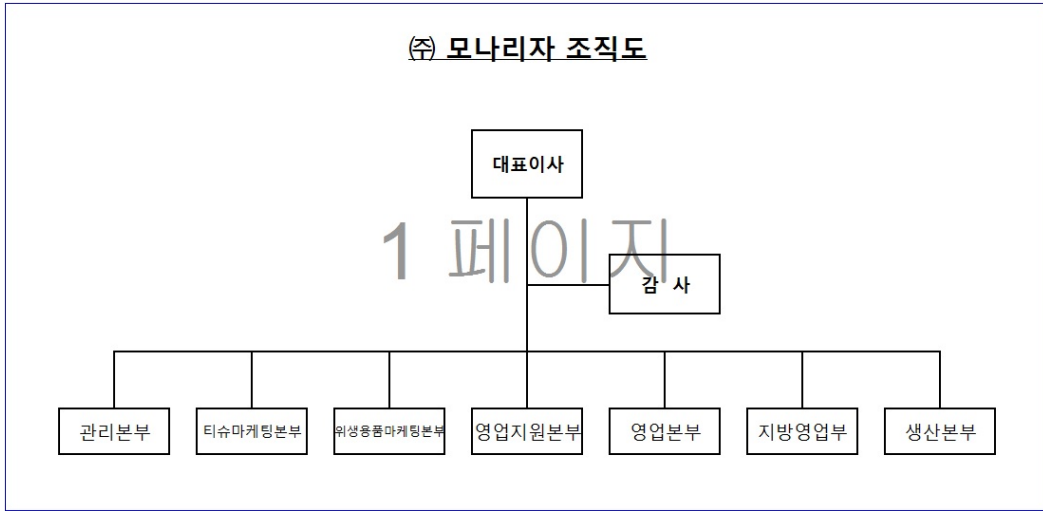
위생용지는 화장지가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활수준의 고급화로 프리미엄 제품 다변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수준에 비해 아직 보급율이 낮은 성인용 기저귀 시장은 노령인구 및 복지예산의 증가, 성인용기저귀에 대한 인식의 전환 등으로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화장지 제품 시장은 초기 투자비용이 비교적 적고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 기업이 경쟁하고 있으며, 기저귀 시장은 기술집약적 제품으로 브랜드 인지도 위주의시장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2015년 기저귀 매출액은 1,94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144.8% 증가하였습니다.

온라인채널의 가격상승, 중국 산아정책의 변화, 팬티형기저귀 사용의 가속화 등으로 시장규모는 소폭 상승할것으로 전망됩니다.

(5)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영업상황의 개요는 'III. 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 - 나. 회사의 현황' 참고

나.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자본변동표·현금흐름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주석사항)

- 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제39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제38기 2014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모나리자

(단위 : 원)

과 목	제39(당) 기말		제38(전) 기말	
자 산				
I. 유동자산		40,056,623,331		37,074,844,780
1. 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4,25)	9,442,744,876		12,071,649,199	
2. 단기금융상품 (주석4,24)	3,000,000,000		-	
3.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주석4,5,25)	2,000,894,000		-	
4. 매도가능금융자산(주석4,9)	715,000		-	
5. 매출채권및기타채권(주석4,6,26)	18,084,015,374		19,127,079,660	
6. 재고자산(주석7)	7,399,803,765		5,729,951,250	
7. 기타유동자산(주석8,26)	128,450,316		146,164,671	
II. 비유동자산		38,644,437,787		37,914,850,275
1. 매도가능금융자산(주석4,9)	1,515,000		2,230,000	
2. 유형자산(주석10,27,29)	37,412,625,892		36,935,654,125	
3. 무형자산(주석11,29)	185,975,095		127,062,187	

4. 장기채권및기타채권(주석4,6,26)	1,044,321,800		849,903,963	
자 산 총 계		78,701,061,118		74,989,695,055
부 채				
I. 유동부채		13,580,710,923		14,630,174,812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주석12,25,26)	11,349,063,995		11,122,240,485	
2. 단기차입금(주석12,13,25,27)	500,000,000		500,000,000	
3. 당기법인세부채	824,231,418		1,590,603,938	
4. 기타유동부채(주석14,26)	907,415,510		1,417,330,389	
II. 비유동부채		107,379,963		209,007,710
1. 장기미지급금및기타부채(주석12,25,26)	12,547,170		12,547,170	
2. 이연법인세부채(주석24)	94,832,793		196,460,540	
부 채 총 계		13,688,090,886		14,839,182,522
자 본				
1. 자본금(주석16)	18,885,627,500		18,885,627,500	
2. 기타불입자본(주석16)	3,437,386,562		3,437,386,562	
3. 이익잉여금(주석17)	42,689,956,170		37,827,498,471	
자 본 총 계		65,012,970,232		60,150,512,533
부 채 및 자 본 총 계		78,701,061,118		74,989,695,055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제39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38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모나리자

(단위 : 원)

과 목	제 39(당) 기		제 38(전) 기	
I. 매출액(주석19,26,29)		124,972,519,736		124,816,020,892
II. 매출원가(주석20,26)		95,579,979,779		94,668,836,037
III. 매출총이익		29,392,539,957		30,147,184,855
IV. 판매비와관리비(주석20,21,26)		23,152,044,090		21,727,971,539
V. 영업이익		6,240,495,867		8,419,213,316
VI. 영업외수익		385,501,110		476,502,110
1. 금융이익(주석22,26)	373,853,833		282,103,730	
2. 기타영업외이익(주석23)	11,647,277		194,398,380	
VII. 영업외비용		317,865,550		611,557,870
1. 금융원가(주석22)	16,127,118		20,473,967	
2. 기타영업외비용(주석23)	301,738,432		591,083,903	
VI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6,308,131,427		8,284,157,556
IX. 법인세비용(주석24)		1,445,673,728		1,730,388,565
X. 계속영업이익		4,862,457,699		6,553,768,991
XI. 중단영업손실(주석30)		-		(866,784,060)
XII. 당기순이익		4,862,457,699		5,686,984,931

XIII. 기타포괄이익		-		-
XIV. 포괄이익		4,862,457,699		5,686,984,931
XV. 주당이익(주석18)				
1. 계속영업과 중단영업				
(1) 기본 및 희석주당순이익		133		155
2. 계속영업				
(1) 기본 및 희석주당순이익		133		179

-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39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38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모나리자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기타불입자본	이익잉여금	총 계
2014. 1. 1	18,885,627,500	3,437,386,562	32,140,513,540	54,463,527,602
당기순이익	-	-	5,686,984,931	5,686,984,931
2014.12.31	18,885,627,500	3,437,386,562	37,827,498,471	60,150,512,533
2015. 1. 1	18,885,627,500	3,437,386,562	37,827,498,471	60,150,512,533
당기순이익	-	-	4,862,457,699	4,862,457,699
2015.12.31	18,885,627,500	3,437,386,562	42,689,956,170	65,012,970,232

-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제39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38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모나리자

(단위 : 원)

과 목	제 39(당) 기	제 38(전) 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262,177,416	12,897,321,170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8,260,428,965	13,930,682,795
당기순이익	4,862,457,699	5,686,984,931
법인세비용	1,445,673,728	1,501,531,975
금융수익	(373,853,833)	(282,103,730)
금융비용	16,127,118	20,473,967
감가상각비	3,322,236,638	2,910,133,059
무형자산상각비	13,252,652	12,339,167
대손상각비	72,545,423	(7,036,355)
외화환산이익	(982,800)	(440,100)
유형자산처분이익	-	(22,210,625)
매각예정자산손상차손	-	471,260,492
유형자산처분손실	369,765	47,027,091

운전자본의변동	(1,097,397,425)		3,592,722,923	
(1)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감소	989,854,749		1,549,365,437	
(2)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1,674,884,427)		1,463,315,610	
(3)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17,714,355		(39,822,252)	
(4) 장기채권및기타채권의 증가	(218,827,000)		(2,251,300)	
(5)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증가(감소)	298,659,777		(287,895,784)	
(6)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530,257,634)		1,286,011,212	
(7) 총당부채의 증가(감소)	20,342,755		(375,000,000)	
(8) 장기미지급금및기타부채의 감소	-		(1,000,000)	
2. 이자의 수취	331,539,564		246,832,785	
3. 이자의 지급	(16,117,118)		(20,797,254)	
4. 법인세의 납부	(2,313,673,995)		(1,259,397,156)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891,081,739)		(3,833,220,485)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감소	5,022,084,383		5,717,136,773	
2.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감소	5,000,000,000		2,000,000,000	
3.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		3,200,930,000	
4. 유형자산의 처분	683,340		59,427,332	
5.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3,000,000,000)		-	
6.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증가	(7,000,000,000)		(2,000,000,000)	
7.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증가	(5,000,000,000)		(7,000,000,000)	
8. 유형자산의 취득	(3,841,683,902)		(5,806,700,870)	
9. 무형자산의 취득	(72,165,560)		(4,013,720)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1. 단기차입금의 차입	500,000,000		3,500,000,000	
2. 단기차입금의 상환	(500,000,000)		(3,500,000,000)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I+II+III)		(2,628,904,323)		9,064,100,685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2,071,649,199		3,007,548,514
V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9,442,744,876		12,071,649,199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주식사항)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제39기	2015년 1월 1일 부터	제38기	2014년 1월 1일 부터
	2015년 12월 31일 까지		2014년 12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2016년 3월 25일	처분확정일	2015년 3월 27일

주식회사 모나리자

(단위:원)

구 분	당 기	전 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42,304,281,562	37,441,823,863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37,441,823,863	31,754,838,932
2. 당기순이익	4,862,457,699	5,686,984,931
II. 이익잉여금처분액	(2,010,842,625)	-

1. 이익준비금	182,803,875		-	
2. 배당금 주당현금배당(율) - 당기 : 50원(10%) - 전기 : -	1,828,038,750		-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40,293,438,937		37,441,823,863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39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38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모나리자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모나리자(이하 "당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에 소재하고 있으며, 화장지 및 위생용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1988년 10월14일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현재 주주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엠에스에스홀딩스(주)	24,135,654	66.00
자기주식	10,480	0.03
기타	12,425,121	33.97
합 계	36,571,255	100.00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당 재무제표는 2016년 1월 28일자 이사회에서 발행 승인되었으며, 2016년 3월 25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재무제표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개정)

근무연수의 경과와 무관한 기여금을 근무기간에 배분하지 않고 근무용역이 제공되는기간에 근무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0-2012 cycle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과 관련하여 '가득조건'과 '시장조건'의 정의를 개정하고 '성과조건'과 '용역제공조건'의 정의를 추가하는 개정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 규정하는 조건부대가의 분류 및 측정에 대한 개정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서 규정하는 부문자산을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만 보고부문의 총자산에서 기업전체의 자산으로의 조정을 공시하도록 하는 개정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1-2013 cycle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적용범위에 '공동약정 자체의 재무제표에서 공동약정의 구성에 대한 회계처리'는 제외됨을 명확히 하는 개정사항을 포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등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이 존재하며,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동 개정사항은 중요성과 통합표시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며 재무제표에 중간합계를 추가로 표시하는 경우의 고려사항을 구체화하고 주식공시 순서 및 지분법적용자산 관련 기타 포괄손익 표시방법을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개정사항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개정)

동 개정사항은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방법이 적절하지 않음을 명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개정)

동 개정사항은 무형자산이 수익의 측정치로 표현되거나 소비와 무형자산의 경제적 효익 소비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할 수 있는 제한된 상황이 아니라면 수익에 기초한 상각방법은 반증할 수 없는 한 적절하지 않다고 간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및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개정)

동 개정사항은 투자기업에 해당하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할 때,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관계기업 등의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으로 반영한 회계처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개정)

동 개정사항은 공동영업의 활동이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3호 '사업결합'에서 정의하는 사업을 구성하고, 공동영업자가 해당 공동영업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사업이 공동영업에 출자되어 공동영업이 설립되면서 해당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3호와 다른 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결합 회계처리와 관련된 원칙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할 것과 해당 기준서들이 요구하는 관련 정보를공시하여야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개정사항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제정)

동 기준서에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에 적절한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나 위험회피효과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그 주요 특징으로 합니다. 동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측정'을 대체하며,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제정)

동 기준서는 기업이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것이 재화나 용역과 교환하여 얻게 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나타나도록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핵심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핵심원칙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5단계- 1) 고객과의 계약 식별, 2) 수행의무 식별, 3) 거래가격 산정, 4) 거래가격을 계약 내 수행의무에 배분, 5)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인식-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 제1018호 '수익',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 이전',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를 대체하며,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2-2014 cycle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과 관련하여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매각예정에서 분배예정으로 또는 반대로 재분류될 때 이는 처분이나 분배 계획의 변경이 아니므로 계획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는 개정사항을 포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당사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로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영진은 자산의 매각계획을 확약해야 하며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3) 수익인식

당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에서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익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당사의 활동별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판매

당사는 재화의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이전된 시점에 재화의 판매에 따른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용역의 제공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행된 용역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기 위하여 거래의 성격에 따라, 작업수행정도의 조사, 총예상용역량 대비 현재까지 수행한 누적용역량의 비율, 총추정원가 대비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원가의 비율 등의 제공한 용역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3) 로열티수익

로열티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배당금수익과 이자수익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은금융자산의 예상만기에 걸쳐 수취할 미래현금의 현재가치를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5) 임대수익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인식에 대한 당사의 회계정책은 주석 2.(8)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 리스

당사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 이전되는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금융리스 외의 모든 리스계약을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당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당사는 금융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의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을 금융리스채권으로인식하

고, 금융리스순투자 미회수분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리스료수익을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수익으로 인식하고,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한 후 정액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당사가 리스이용자인 경우

당사는 리스기간개시일에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재무상태표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하고 있습니다.

리스료는 매기 부채의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이자비용과 리스부채의 상환액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차입원가에 대한 당사의 회계정책에 따라 당해 적격자산의 일부로 자본화되는 경우를 제외한 금융원가는 발생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료는 리스자산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리스에서 발생한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 계약시 리스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이를 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리스인센티브의 효익은 리스자산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정액기준으로 리스비용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5) 외화환산

당사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화폐성 항목의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 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6) 차입원가

당사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운용 투자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정부보조금

당사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인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정부보조금은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산정된 정부대여금 공정가치와 수취한 대가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 관련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부보조금은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 관련 정부보조금은 보상하도록 의도된 비용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인식하며,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원가의 발생 없이 당사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역을 제공한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 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9)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포괄손익계산서상 세전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된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경우, 동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이 매각을 통하여 회수될 것이라는 반증가능한 가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에 대한 반증이 없다면,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측정에는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이 모두 매각을 통하여 회수되는 세효과를 반영합니다. 다만 투자부동산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서 매각을 위해 보유하기보다는 그 투자부동산에 내재된 대부분의 경제적 효익을 기간에 걸쳐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는 경우 이러한 가정이 반증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10)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

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건물	6 ~ 60 년
건축물	10 ~ 50 년
기계장치	5 ~ 40 년
차량운반구	4 ~ 5년
공구기구비품	2 ~ 20년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무형자산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2)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

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후에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영업권을 제외한 유·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

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4)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종료일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 손실부담계약

손실부담계약에 따른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계약상의 의무이행에서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 손실부담계약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구조조정

당사가 구조조정에 대한 공식적이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구조조정 계획의 이행에 착수하거나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을 당사자에게 구조조정의 주요 내용을 공표함으로써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을 당사자가 당사가 구조조정을 이행할 것이라는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될 때에 구조조정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하는 지출에서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발생하고 기업의계속적인 활동과 관련 없는 지출만을 구조조정충당부채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3) 제품보증

제품보증충당부채는 관련 제품의 판매일에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사업결합으로 인수한 우발부채

사업결합으로 인수한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 보고기간말에 당해 우발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과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15)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당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부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금융자산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 및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금융자산의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1)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이자수익은 채무상품이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이 적용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がい거나 단기매매금융자산이거나 또는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 매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파생상품은 해당 파생상품이 유효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을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단기간 내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당사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단기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최근 실제운용하고 있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경우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다음의 경우에 단기매매금융자산이 아니거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이 적용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 아닌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하였을 인식과 측정 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금융자산이 당사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금융자산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평가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과 이자수익이 포함되어 있으며, 포괄손익계산서상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 만기보유금융자산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고, 만기가 고정되었고 당사가 만기까지 보유할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인식하고 있습니다.

4)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입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화폐성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외환손익(아래 참고)과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이자수익을 제외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장부금액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이 처분되거나 손상되는 때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의 배당금은 당사가 배당금을 수취할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외화로 측정하며 보고기간 말 현재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외환손익은 화폐성자산의 상각후원가에 기초하여 결정하며, 기타 외환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매도가능지분상품과, 공시가격이 없는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은 매 보고기간 말에 취득원가에서 식별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5) 대여금 및 수취채권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은 원칙적으로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할인효과가 중요하지 않은 단기수취채권을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6) 금융자산의 손상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 말에 손상에 대한 징후를 평가합니다. 최초 인식 후에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쳤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금융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에 대하여는, 동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이하로 중요하게 하락하거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모든 금융자산에 대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발행자 또는 거래상대방이 중요한 재무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연체
- 차입자가 파산하거나 재무구조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소멸되는 경우

매출채권과 같은 특정 분류의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손상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자산은 추가로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취채권 포트폴리오가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수취채권의 채무불이행과 관련이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상황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변화뿐만 아니라 대금회수에 관한 당사의 과거 경험, 평균신용공여기간인 60일을 초과하는 연체 횟수의 증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률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후속 기간에 환입하지 않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의 범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사용하여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채권과 대손충당금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제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제각하였던 금액이 후속적으로 회수된 경우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손충당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될 때, 과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은 후속기간에 손상차손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은 손상

차손을 환입하는 시점의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계상되었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해서는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않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의 공정가치의 증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채무상품에 대해서는 후속기간에 공정가치의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환입하고 있습니다.

7)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당사는 당해금융자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사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 수취한 대가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의 합계액과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전체가 제거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예를 들어 당사가 양도자산의 일부를 재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거나, 잔여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잔여지분의 보유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당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경우), 당사는 당해 금융자산의 기존 장부금액을 양도일 현재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지속적 관여에 따라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제거되는 부분에 대하여 수취한 대가와 제거되는 부분에 배분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의 합계액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에 배분된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은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16)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1) 부채·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당사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3) 복합금융상품

당사는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전환사채)을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와 자본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의 교환을 통해 결제될 전환권옵션은 지분상품입니다.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발행일 현재 조건이 유사한 일반사채에 적용하는 시장이자율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될 때까지 또는 금융상품의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 기준으로 부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는 전체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를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으로 자본항목으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본으로 분류된 전환권옵션(전환권대가)은 전환권옵션이 행사될 때까지 자본에 남아있으며, 전환권옵션이 행사되는 경우 자본으로 인식한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가 지분상품으로 전환되거나 전환권이 소멸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손익은 없습니다.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총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부채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전환사채의 존속기간 동안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4)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당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또는 '기타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이 적용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 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를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한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 당사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단기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최근 실제 운용하고
- 있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경우, 당사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거나 또는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자가 지급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금융부채가 당사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부채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 포괄손익계산서상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동 평가손익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지급된 이자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기타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로 후속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7)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
- (나)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8) 금융부채의 제거

당사는 당사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지급한 대가와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당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 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18)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제도 관련 회계처리

당사는 배출권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며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은 영(0)으로 측정하고 매입한 배출권은 배출권의 취득을 위한 지급한 대가인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로부터 해당 이행연도와 관련하여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이 당기에 발생한 배출부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데 충분한 경우에는 배출부채를 영(0)으로 측정하며, 다만 무상할당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서는 부족분에 해당하는 배출부채의 이행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말 현재의 최선의 추정치로 배출부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식사항은 3월 16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제 39 기	제 38 기
주당배당금(단위 : 원)	50	-
배당총액(단위 : 원)	1,828,038,750	-
시가배당율(단위: %)	1.25	-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신 설)	제24조의 4 (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감사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24조,제24조의1및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문 신설
(신 설)	제24조의 5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24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 위원 해임에 관한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또한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해임의 경우에도 같다. ④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문 신설

<p>(신 설)</p>	<p>제24조의 6 (감사위원회의 직무)</p> <p>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p> <p>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p> <p>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p> <p>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p> <p>⑥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p> <p>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p> <p>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p> <p>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p>	<p>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문 신설</p>
<p>(신 설)</p>	<p>제24조의 7 (감사록)</p> <p>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p>	<p>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문 신설</p>
<p>제15조 (소집)</p> <p>①~⑥ 생략</p> <p>⑦ 회사가 제④항에 따라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회 후보자 또는 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p>	<p>제15조 (소집)</p> <p>①~⑥ 현행과 동일</p> <p>⑦ 회사가 제④항에 따라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회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p>	<p>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문 변경</p>
<p>제 4장 이사회와 이사, 감사</p>	<p>제 4장 이사회와 이사, 감사위원회</p>	<p>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문 변경</p>

<p>제20조 (이사 및 감사의 수)</p> <p>① 생략</p> <p>② 당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내로 한다. 그 중 1명 이상은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한다. 감사는 당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겸할 수 없다.</p> <p>③ 생략</p>	<p>제20조 (이사의 수)</p> <p>① 현행과 동일</p> <p>② 삭제(2016.03.25)</p> <p>③ 현행과 동일</p>	<p>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문 삭제</p>
<p>제20조의 2 (이사 및 감사의 선임)</p> <p>①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와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한다.</p> <p>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의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 <p>③~⑤ 생략.</p>	<p>제20조의 2 (이사 및 감사위원의 선임)</p> <p>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p> <p>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감사위원의 선임은 이사회에서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p> <p>③~⑤ 현행과 동일</p>	<p>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문 변경</p>
<p>제21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p> <p>① 생략</p> <p>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p> <p>③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제21조 (이사의 임기)</p> <p>① 현행과 동일</p> <p>② 삭제(2016.03.25)</p> <p>③ 이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문 변경 및 삭제</p>
<p>제22조 (임원의 보선)</p> <p>이사 또는 감사가 결원되었을 때에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궐선임 한다. 그러나 재직 임원수가 법정수가 되고 또는 업무 집행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보궐선임을 보류 또는 다음 정기주주총회시까지 연기할 수 있다. 보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p>	<p>제22조 (이사의 보선)</p> <p>이사가 결원되었을 때에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궐선임 한다. 그러나 재직 임원수가 법정수가 되고 또는 업무 집행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보궐선임을 보류 또는 다음 정기주주총회시까지 연기할 수 있다. 보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p>	<p>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문 변경</p>
<p>제23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p> <p>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p> <p>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의결을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p> <p>③ 이사와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p>	<p>제23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p> <p>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p> <p>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의결을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p> <p>③ 삭제(2016.03.25)</p>	<p>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문 변경 및 삭제</p>

<p>제24조 (이사회 구성과 소집)</p> <p>① 생략</p> <p>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사장이 회일 5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통지하여 소집 한다. 대표이사 사장이 유고시에는 제15조 ③항을 준용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p>	<p>제24조 (이사회 구성과 소집)</p> <p>① 현행과 동일</p> <p>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사장이 회일 5일전에 각 이사에 통지하여 소집 한다. 대표이사 사장이 유고시에는 제15조 ③항을 준용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p>	<p>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문 변경</p>
<p>제24조의 2 (이사 및 감사의 직무)</p> <p>①~③ 생략</p> <p>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p> <p>1. 감사는 당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p> <p>2.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p> <p>3.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한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p> <p>4.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p> <p>5. 4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p> <p>6.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p> <p>7.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 날인 한다</p>	<p>제24조의 2 (이사의 직무)</p> <p>①~③ 현행과 동일</p> <p>④ 삭제(2016.03.25)</p>	<p>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문 삭제</p>
<p>제24조의 3 (이사 및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경감)</p> <p>① 당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p> <p>②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 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 2(회사기회유용 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24조의 3 (이사 및 감사위원의 회사에 대한 책임경감)</p> <p>① 당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위원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p> <p>② 이사 또는 감사위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 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 2(회사기회유용 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문 변경</p>

제25조의 3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의 3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문 변경
제26조 (감사) 감사는 당 회사의 회계에 관한 서류를 조사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제26조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는 당 회사의 회계에 관한 서류를 조사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문 변경
제29조 (재무제표의 작성 비치) ① 당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은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주주총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생략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불구하고 당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 결의로 이를 승인 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⑤~⑦ 생략	제29조 (재무제표의 작성 비치) ① 당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은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현행과 동일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불구하고 당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 결의로 이를 승인 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⑤~⑦ 현행과 동일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문 변경
(신 설)	부 칙 (2016년 3월 25일) 1) 이 정관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송명수	1958.11.1	사외이사	없음	이사회
김승호	1961.5.3	사내이사	없음	이사회
총 (2)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약력·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송명수	- 現)쌍용씨앤비 사외이사	- 前)가락공판장 장장 - 前)성남유통센터 사장 - 前)농협유통 사업담당 전무	없음
김승호	- 現)쌍용씨앤비 대표이사	- 前)LG생활건강 UNICHARM 마케팅 영업총괄전무	미등기 이사

※ 기타 참고사항

- 2016년 3월 25일 정기주주 총회에서 사외이사 송명수, 사내이사 김승호를 신규 선임할 예정입니다.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8 (2) 명	6 (2) 명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1,000,000,000 원	1,000,000,000 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감사의 수	1 명	1 명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150,000,000 원	150,000,000 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